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873

발의연월일: 2024. 12. 24.

발 의 자: 박정하·진종오·이종욱

조은희 • 신성범 • 이인선

김용태 · 정성국 · 김형동

김상훈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공부문(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게임물 등급분류에 대한 민간 자율심의 요구가 지속 제기되어 왔으며, 미국·유럽·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게임물 등급분류를 민간 자율로 실시하고 있는 바, 게임콘텐츠에 대한 민간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민간의 등급분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민간등급분류기관에 등급분류를 위탁할수 있는 게임물의 범위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추가하여 게임콘텐츠에 대한 공공부문의 관여를 축소하고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확대하며 아울러 등급분류기관의 준수사항을 강화하려는 것임(제24조의2제1항 등).

법률 제 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한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게임 결과에 따른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나 제2조제1호의2 각 목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한 업무와 청소년게임 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에 대한 업무는 제외한다.

제24조의3제2호 중 "현황, 등급분류 거부결정 시 그 사유"를 "현황과 근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10시간"을 "20시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의사결정 회의록을 작성할 것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의2(등급분류 업무의 위탁	제24조의2(등급분류 업무의 위탁
등) ① 위원회는 제21조제2항	등) ① <u>다음</u>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	
는 게임물에 대한 다음 각 호	
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	
인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 지정하는 등급분류기관에 5	<u>다만, 게</u>
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	임 결과에 따른 재산상 이익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또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나
	제2조제1호의2 각 목에 해당하
	는 게임물에 대한 업무와 청소
	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
	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에 대한
	업무는 제외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4조의3(등급분류기관의 준수	제24조의3(등급분류기관의 준수
사항) 등급분류기관은 다음 각	사항)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1의2. (생 략)	1. ~ 1의2. (현행과 같음)

- 2. 게임물 등급별 등급분류 신청 현황, 등급분류 결정과 등급분류 거부결정 현황, 등급분류 거부결정 시 그 사유 및 게임물별 등급분류 소요기간 등이 포함된 연도별 활동 보고서를 매년 2월 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할 것
- 3. 등급분류기관의 임직원은 매년 10시간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실시하는 게임물 등급분류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것 <신 설>

<u>4.</u> (생 략)

2
<u>현</u> 황과
근거
3
<u>20시간</u>
_
4. 의사결정 회의록을 작성할
<u>것</u>
5. (현행 제4호와 같음)